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김삼화의원, 남인순의원이 각 2017. 2. 13., 2016. 8. 8.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각 2016. 8. 8., 2017. 2. 13.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478, 의안번호 2005598)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두 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대상아동"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이 아동·청소년 및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통합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 10.)』를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및 보호처분 규정 삭제 필요 여부

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국제인권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전부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34조는 당사국의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3.은 성적학대와 착취를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아동의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하여 유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보호처분의 성격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안전망의 미흡 등으로 인한 물적·인적 자원의 부재에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기본적 의식주 해결의 곤란과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있어 성인은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 가.항과 같은 취지 아래 제26조 제1항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그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소년의 보호와 구제에 있다. 그러나 위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소년법」 제53조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소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두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위 현행 법률은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처벌'로 인식되고 작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 신설 필요 여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대부분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단체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교우관계 및 학업문제, 가정해체, 빈곤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성인에 비해 보다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기 쉽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 및 접수, 주거, 교육·상담, 의료, 법률,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7. 6. 15.

위 원 장 이 성 호 이성호

위 원 이 경 숙 이경숙

위 원 정 상 환 정상환

위 원 최혜리 최혜리

위 정본입니다.

2017. 7. 2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박 미 숙